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3가단46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새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107,900원

내역 : 인지대 금45,500원, 송달료 금62,40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 동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충북 제천시 C 임야 29500㎡를 채무자에게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및 허가설 계비용을 포함하여 금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채무자는 2021. 5. 20. 금30,000,000원, 2021. 6. 17. 금20,000,000원을 신청의 D의 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2021. 6. 24. 채권자가 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현재 채무자 법인의 대표가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3. 이후 채무자는 매매대금 등 잔금 금1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독촉하 자 2021. 11. 3. 금100,000,000원을 2022.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 확인 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잔금지급기일인 2022. 2. 10.이 경과한 신청일 현재까지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매매대금 등 잔금 지급촉촉에도 불구하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 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역금의 지급을 구하면 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